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60
----------	------

2022년 4월 1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
3. 상정일자 :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2년 4월 1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최웅장)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함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60호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지난 2020년 12월 22일, 상위법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정보공개법’)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이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기존의 외부위원 정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(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¹⁾).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의 동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1) 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~② (생략)

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,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,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2.><시행 2021.12.22.>

④~⑥ (생략)

[표-1]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

연 번	직 위 / 직 업	성 명	임 기	비고
1	기획조정실장	최OO	재임기간	내부
2	교육정책국장	고OO	재임기간	내부
3	변호사	권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4	교수	이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5	교수	장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6	변호사	최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7	변호사	한OO	2021. 5.10. ~ 2023. 5. 9.	외부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2분의 1은” 을 “3분의 2는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~ ② (생략) ③심의회는 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 중 <u>2분의 1</u>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. ④ ~ ⑦(생략)</p>	<p>제16조(정보공개심의회) ① ~ ② (현행과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3분의 2는----- -----. ④ ~ ⑦(현행과 같음)</p>